

이모티콘 캐릭터가 취하는 동작의 저작물성을 판단한 사건

(2022.8.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1574, 확정)



법제지원부 김지수

주요 쟁점 이모티콘 캐릭터가 취하는 동작의 저작물성 및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시사항  (이모티콘의 저작물성) 이모티콘의 캐릭터가 감정의 표현 형식을 구사하는 도구가 되어 캐릭터의 표정이나 동작을 통하여 감정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표정이나 동작에 창조적 개성이 있다면 그러한 표현 형식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음. 동작을 이모티콘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구도, 패턴, 리듬 등에 창조적 개성이 부여된 경우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음.

 (저작권 침해 판단) 원고와 피고의 첫 번째 이모티콘의 경우 캐릭터가 손을 얼굴의 입 부근 가운데 방향으로 모은 상태로, 들고 있는 사물이 다들 뿐 머리와 골반을 좌우로 흔들면서 리듬에 맞추어 몸 전체가 상하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작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의거관계가 성립됨. 따라서 피고는 첫 번째 이모티콘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를 통하여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음.

시사점 법원은 1-2초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야하는 이모티콘의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작자가 프레임별로 캐릭터 신체 부위의 위치나 각도를 세세히 조정하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동작의 리듬이나 패턴에 있어서 창작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작물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심급	1심 (원심)
당사자	원고, 피고 : 이모티콘 제작자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581574
선고일자	2022.8.19.
판결결과	원고 승소
관련법령	저작권법(제2조 제1호)

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8년 7월경 이모티콘을 출시하였고, 피고는 2019년 3월경 이모티콘을 출시하였음. 원고의 이모티콘은 캐릭터가 특정한 동작을 취하는 형태의 “움직이는 이모티콘”이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이모티콘이 자신의 이모티콘 중 3가지의 모양과 동작이 유사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음.

법원의 판단

1. 주요 법리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고 있음.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함. 다만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표현으로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음.

☐ **(이모티콘의 저작물성)** 이모티콘은 사람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표현 형식이므로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서 정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음. 이모티콘에서 캐릭터가 감정의 표현 형식을 구사하는 도구가 되어 **캐릭터의 표정이나 동작을 통하여 감정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표정이나 동작에 창조적 개성이 있다면 그러한 표현 형식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음.** 원칙적으로 사람이 감정을 나타낼 때 흔히 취하는 동작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그 동작에 창작성에 인정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1-2초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작성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데, 동작이 단순하고 반복적이거나 이미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이미지 프레임을 작성하고 각 프레임 별로 신체부위의 위치 및 각도를 세세하게 설정하여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등 동작을 이모티콘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구도, 패턴, 리듬 등에 창조적 개성이 부여된 경우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음.

2. 원고 각 이모티콘의 저작물성 (일부 긍정)

☐ 원고의 첫 번째 이모티콘의 동작은 머리와 골반을 좌우로 흔드는 동작에서 머리와 골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리듬에 맞추어 몸 전체가 상하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기분 좋은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함. 이 동작은 단순하고 반복적이지만, **이러한 동작을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기분 좋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흔히 취하는 동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해당 동작은 창작성이 인정됨.**

- ㉠ 원고의 두 번째 이모티콘의 동작은 양손의 손가락을 위로 향한 채로 한쪽 팔을 쪽 빼어 올리고, 팔을 위로 올릴 때 반대쪽 발을 들어 올리며, 발을 내릴 때는 몸의 가운데 위치한 바닥을 향해 내리며, 동작을 할 때마다 몸 전체의 중심이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이 동작은 리듬감을 가지고 몸 전체의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팔과 발을 엇갈리게 동작하는 것으로서 사람이 일상에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흔히 취하는 동작이라 보기 어렵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으로 보지도 않음. 따라서 해당 동작은 창작성이 인정됨.
- ㉡ 원고의 세 번째 이모티콘의 동작은 이른바 ‘군대박수’라 지칭되는 동작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양손을 포물선을 그리며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박수를 치고, 박수의 리듬에 맞춰 몸의 무게 중심을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이 동작은 이미 사람 또는 다른 이모티콘을 통해 표현된 사실이 있음. 따라서 해당 동작에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음.

3. 원고 이모티콘과 피고 이모티콘의 실질적 유사성 (일부 긍정)

- ㉠ 피고의 첫 번째 이모티콘의 동작은 원고의 첫 번째 이모티콘과 동일하게 캐릭터가 손을 얼굴의 입 부근 가운데 방향으로 모아 작은 사물을 든 상태로 머리와 골반을 좌우로 흔드는 동작이고, 들고 있는 사물이 다르다는 것 외에 동작에서는 차이가 없음. 프레임별로 비교하였을 때에도 각 프레임에 표현된 캐릭터의 머리와 몸체의 기울기가 거의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함.
- ㉡ 피고의 두 번째 이모티콘의 동작은 원고의 두 번째 이모티콘의 특징과 달리 팔 전체를 위로 쪽 빼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팔을 구부린 채로 살짝만 위로 들어올리는 점, 발을 올린 이후 내릴 때 몸의 가운데가 아닌 원래 발이 있던 위치의 근처로 내리는 점, 그로 인하여 몸 전체의 중심이 좌우로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발을 올렸다가 내리는 점, 동작의 리듬과 템포가 서로 다른 점에서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음.

4. 의거관계

- ㉠ 원고의 첫 번째 이모티콘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된 피고의 첫 번째 이모티콘의 의거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원고와 피고 이모티콘 프레임에 표현된 캐릭터의 머리와 팔 부분을 겹쳐보았을 때 드로잉 라인이 겹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음. 또한 피고는 로투스코핑¹⁾ 기법으로 이모티콘을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모델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캐릭터 간에는 체형, 비율, 신체부위의 위치에 큰 차이가 있어 실사 이미지의 프레임에 따서 이모티콘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실사 이미지의 외형선을 한 프레임씩 베껴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다음 이를 원본 이미지와 합성하는 기법

5. 결론

- ㉠ 피고의 첫 번째 이모티콘은 원고의 첫 번째 이모티콘 동작과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가 인정됨. 따라서 피고는 첫 번째 이모티콘을 제작 및 판매하는 행위를 통하여 원고들의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음.
- ㉡ 피고의 두 번째 이모티콘은 원고의 두 번째 이모티콘의 동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원고의 세 번째 이모티콘의 동작에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두 번째, 세 번째 이모티콘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음.

시사점

이번 판례는 이모티콘에서 캐릭터가 취하는 특정 동작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로, 이모티콘을 통해 표현되는 동작 중 저작물성이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고 할 수 있음. 법원은 캐릭터가 취하는 동작이 사람이 감정을 표현할 때 흔히 하는 표현이 아니거나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이면서, 구조·패턴·리듬에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된 것이라면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음.

이미 이모티콘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중 움직이는 이모티콘의 비중도 매우 높아 앞으로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취하는 동작 관련 소송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작성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이모티콘 동작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더욱 구체화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련 이슈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

※ 본지의 의견은 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